

#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주요 내용

이준표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객원연구원, 법학박사

## 1. 들어가며

태국 최초의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B.E. 2562, 2019.): PDPA)」이 2019년 2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관보에 게재되었다.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의 제정은 그동안 각 법안 및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또한 상이했던 개인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공개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태국은 'Thailand 4.0'이라고 불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디지털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제정을 포함한 사업환경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IT 및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는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sup>1)</sup>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020년 2월 4일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무단 또는 불법 수집·이용·공개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personal data)라 함은, 사람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 가

1 高祖大樹, タイ個人情報保護法の成立とその概要, TMI Associates Newsletter(Vol. 40), TMI総合法律事務所, 2019, p. 1.

능한 정보를 의미하며, 사망한 사람의 정보는 제외된다.<sup>2)</sup>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민감한 개인정보'란, 인종, 종족,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범죄 기록, 노동조합 가입 여부, 유전자 관련 정보, 생체 인식 정보, 건강 관련 정보, 성적 지향 및 성생활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sup>3)</sup>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상 응급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수집이 금지된다.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은 내용이나 체계 면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일반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sup>4)</sup>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sup>5)6)</sup>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의 시행 이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태국과의 교역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 법에 대한 이해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의 입법 배경과 경위, 구성 체계,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6조.

3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26조.

4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은 2016년 4월 14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통과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EU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가이드북, 2018. 5., 10면).

5 태국이 「개인정보 보호법(PDPA)」 법안 준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을 참조한 것은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있다.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이전,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국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의 태국 현지 대리인 지정,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설립 등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을 참조한 다양한 요소들 포함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 분석」, 해외 개인정보 보호 동향 보고서, 2019. 4., 7면).

6 石川智也, タイの個人情報保護法制と#23455:務&#23550:&#24540:, 個人情報保護・デ&#12540:タ保護規制ニユ&#12540:ブレタ&#12540:, 2019.11.29., p. 1-4.

## II.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 1. 입법 배경과 경위

태국의 경우,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헌법상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식은 개별법을 통해 규율될 뿐, 개인정보 보호 일반사항을 다루는 통합된 법률은 부재했었다. 다만,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1997년 제정된 태국 「공식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OIA)」을 통해 규율되어 왔다.<sup>7)</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 내에서는 수차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구체적인 입법경위는 다음과 같다.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 초안은 2014년 국무총리실(Office of the Prime Minister)에서 처음 기안되었다. 이후 수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에 의해 최종수정안이 공개되었다.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국무위원회(Council of State)는 2018년 12월 해당 법안을 승인하였다. 2019년 2월 28일 태국 의회에 해당하는 국가입법회의(State Legislative Assembly)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9년 5월 24일 태국 국왕의 인준을 거쳐, 2019년 5월 27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효되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sup>8)</sup> 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sup>9)</sup>

7 태국 「공식정보법(OIA)」에 따르면, 누구나 공공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정보가 국가안보, 공공질서,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에 의해 보호된다. 공공정보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정부기구의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기업의 정보도 포함된다(이준표, “메콩유역의 환경정보접근권에 관한 연구”, 동남아연구27권 3호, 2018. 2., 28면).

8 제2장(개인정보 보호), 제3장(정부주체의 권리), 제5장(이의신청), 제6장(민사책임), 제7장(벌칙) 및 경과규정(제95조, 제96조)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2조).

9 한국인터넷진흥원,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 분석”, 해외 개인정보 보호 동향 보고서, 2019. 4., 3면.

## 2. 구성 체계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은 총 7개 장(Chapter), 9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0)</sup> 이 법은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 ③ 정보주체의 권리, ④ 개인정보 보호기관, ⑤ 이의신청, ⑥ 민사책임 및 벌칙 규정(형사책임·행정책임)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표-1〉 참고).

〈표-1〉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 체계

제1조~제7조(적용범위, 용어정의 등)
제1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8조~제18조)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총칙(제19조~제21조)
제2절 개인정보의 수집(제22조~제26조)
제3절 개인정보의 이용과 공개(제27조~제29조)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제30조~제42조)
제4장 개인정보 보호기관(제43조~제70조)
제5장 이의신청(제71조~제76조)
제6장 민사책임(제77조~제78조)
제7장 벌칙
제1절 형사책임(제79조~제81조)
제2절 행정책임(제82조~제90조)
제91조~제96조(경과규정)

10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총 10개 장, 7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제3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7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8장은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9장은 보칙, 제10장은 벌칙 규정으로 되어 있다.

### 3. 적용 대상과 범위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은 원칙적으로 태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즉, 정보관리자나 정보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에 적용된다. 여기서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에 있어 결정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정보처리자’(data processor)란, 정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정보관리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sup>11)</sup>

이때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행위가 반드시 태국 내에서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태국 밖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태국 내 정보주체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태국 내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PDPA)」이 역외적용된다.<sup>12)</sup>

## III.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 1. 기본 원칙

#### (1) 적법성

태국 「개인정보 보호(PDPA)」상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은 적법성이다. 정보관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행위는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up>13)</sup> 불법적으로 수집·이용·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삭제 또는 폐기되거나 익명화될 수 있다.<sup>14)</sup>

■■■■■■■

11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6조.

12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5조.

13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22조.

14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33조.

## (2)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상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수조건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형식적인 요건의 충족을 넘어 강제, 압박, 자유의지 행사의 제한 등과 같은 요소 없이 자유롭게 제공된 것이어야 한다. 즉, 적법한 동의가 되려면 정보주체에게 불필요한 조건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가 수집·이용·공개되기 전 또는 그 시점에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명시적으로 동의의 취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동의를 요하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은 쉽게 접근 가능하며 모호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sup>15)</sup>

「개인정보 보호법(PDPA)」상 민감한 정보의 수집·이용·공개 요건은 엄격한 편이다. 원칙적으로는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이용·공개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처리되는 예외사유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sup>16)</sup> 대표적인 예외사유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고 억제하기 위하여 정보동의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주체가 직접 동意的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다.<sup>17)</sup>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10세 미만의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law)」상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외하고, 부모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sup>18)</sup>

## 2.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data subject)는 정보관리자의 책임 하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 및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반대권 및 개인정보의 삭제권, 이용제한 및 정확성 유지<sup>19)</sup>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내용들은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다 안전한 기술적·관리적

15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19조.

16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26조.

17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26조.

18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20조.

19 정보관리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이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35조).

조치를 취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sup>20)</sup>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은 제3장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표-2〉 참고).

〈표-2〉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 및 주요 조문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제30조~제42조)	주요 조문
정보열람권	제30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31조
반대권	제32조
삭제권	제33조
정보이용제한권	제34조
정확성 등 유지보장권	제35조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반대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보취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첫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의 합법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가 직접적인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셋째, 과학적·역사적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등이 있다. 다만, 세 번째의 경우 해당 처리가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sup>21)</sup>

또한 정보주체는 정보관리자에게 본인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가 더 이상 수집·이용·공개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법적으로 취급된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가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익명의 데이터가 되도록 요청하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나 법적 청구권의 행사나 방어를 위한 경우,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sup>22)</sup>

20 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EU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가이드북, 2018. 5., 80면.

21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32조.

22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33조.

### 3.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의무

#### (1) 정보관리자의 의무

정보관리자는 정보주체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전이나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일정한 정보'라 함은, ①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②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상·계약상의 필요 및 개인정보 미제공시 미치는 영향, ③ 수집대상 개인정보 및 보유기간, ④ 개인정보의 공개대상 정보, ⑤ 정보관리자의 연락처, ⑥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 등을 말한다.<sup>23)</sup>

또한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의 무단 또는 불법 손실, 접근, 이용, 변경,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제공해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제3자의 불법적인 이용 및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보관리자는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당국(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무국)과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sup>24)</sup>

한편, 정보관리자는 ① 수집한 개인정보, ② 종류별 개인정보 수집 목적, ③ 정보관리자에 대한 세부사항, ④ 개인정보 보유기간,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수단, ⑥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이나 공개 예시, ⑦ 정보주체의 요청이나 이익제기에 대한 거부사유, ⑧ 개인정보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의무가 있다.<sup>25)</sup> 이는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위법요소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 (2) 정보처리자의 의무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은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보처리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관리자의 지시에 근거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해야 한다. 만일,

23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23조.

24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37조.

25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39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처리자는 정보관리자로 간주된다. 둘째, 개인정보의 무단 또는 불법 손실, 접근, 이용, 변경,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유출 및 침해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정보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규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개가 정보주체의 권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조직의 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기록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세부적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칙을 따른다.<sup>26)</sup>

#### 4. 정보보호책임자

정보관리자나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규모가 커서 개인정보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내지는 일정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나, 취급하는 주요 정보가 민감한 정보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Protection Officer)의 주요 업무는 정보관리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또한 그들이 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이다. 또한 정보보호책임자는 법 이행 및 개인정보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사무국과 협력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sup>27)</sup>

#### 5. 해외이전규제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규제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다. 정보관리자가 외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태국 이외의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

26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40조.

27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42조.

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보주체의 구체적인 동의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태국 개인정보 보호감독기구(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ttee: PDPC)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① 법률의 적용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정보주체와 정보관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④ 동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인증을 받은 주체에게 이전되거나, 국제 협력 또는 국제 임무의 틀 안에서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감독기구(PDPC)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보호조치를 적용한 국가로만 이전이 가능하다.<sup>28)</sup>

## 6. 책임 및 벌칙 규정

### (1) 민사적 책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책임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해당 손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증명하면 해당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대표적인 법정면제사유에는 불가항력, 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국가 공무원의 명령에 따른 조치 등이 있다.<sup>29)</sup>

법원은 재량에 따라 실제 손해보상에 더하여 2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①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 ② 정보관리자나 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③ 정보관리자나 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④ 정보관리자나 정보처리자에 의해 제공된 피해구제책 등이 있다.<sup>30)</sup>

28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28조.

29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77조.

30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78조.

## (2)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은 위반의 양태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바트(Baht, 이하 국문으로 표기)<sup>31)</sup>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바트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가 가능하다. 법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이사나 관리자 등 법령 위반에 가담하거나 법령 위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법인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sup>32)</sup>

## (3)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과 관련하여, 위반의 성격에 따라 50만 바트 이하, 100만 바트 이하, 300 만 바트 이하, 500만 바트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에게 동의철회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는 경우, 정보관리자에게는 100만 바트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sup>33)</sup>

〈표-3〉 책임에 따른 주요 벌칙내용

책 임	주요 벌칙내용
민사적 책임	-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2배까지 가능)
형사적 책임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바트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바트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행정적 책임	- 50만 바트 이하의 과징금 - 100만 바트 이하의 과징금 - 300만 바트 이하의 과징금 - 500만 바트 이하의 과징금

31 2020년 4월 13일 매매기준율에 따르면, 1바트는 37.20원이고, 50만 바트는 1천8백6십만 원이다.

32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80조~제81조.

33 「개인정보 보호법(PDPA)」 제82조.

## IV. 나오며: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태국 최초의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PDPA)」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5월 28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그 동안 특정 산업이나 목적에 따라 분산되어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체계적으로 통일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태국 내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 상당한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태국 내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상 역외적용 규정이 있으므로 태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sup>34)</sup>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은 태국 국내는 물론 국외에 위치하는 정보관리자 및 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된다. 즉, 태국 내 투자기업은 물론 태국 내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활동에 폭 넓게 적용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관리자 및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태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조직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태국 국내는 물론 태국과 교역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고객 정보, 공급 업체 정보, 직원 정보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정보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문서 등을 점검해야 한다.<sup>35)</sup> 이러한 규제를 장벽으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이를 통해 기업 내 정보보호 체계 및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태국의 시장 진출 기회 확대는 물론, 태국이 속한 아세안 내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PDPA)」의 규정을 보충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일련의 하위 법령들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준비와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태국 진출 기업들은 향후 공개되는 하위 법령들을 주목하면서 법령 준수체제 구축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34 小出 将夫, “タイ王国個人情報保護法について”, One Asia Lawyers, 2019. 11. 1., p. 1, [https://oneasia.legal/wp-content/themes/standard\\_black/cmspro/img/1db53a9d958d514a7a8dfa60359c955b.pdf](https://oneasia.legal/wp-content/themes/standard_black/cmspro/img/1db53a9d958d514a7a8dfa60359c955b.pdf).

35 한국인터넷진흥원,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 분석”, 해외 개인정보 보호 동향 보고서, 2019. 4., 7면.

## 참고문헌

- 이준표, “메콩유역의 환경정보접근권에 관한 연구”, 동남아연구(제27권 3호), 2018. 2.
- 한국인터넷진흥원, 우리 기업을 위한 ‘EU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가이드북, 2018. 5.
- 한국인터넷진흥원,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 분석”, 해외 개인정보 보호 동향 보고서, 2019. 4.
- 高祖大樹, タイ個人情報保護法の成立とその概要, TMI Associates Newsletter(Vol. 40), TMI総合法律事務所, 2019, p. 1.
- 小出 将夫, “タイ王国個人情報保護法について”, One Asia Lawyers, 2019. 11. 1., [https://oneasia.legal/wp-content/themes/standard\\_black\\_cmspro/img/1db53a9d958d514a7a8dfa60359c955b.pdf](https://oneasia.legal/wp-content/themes/standard_black_cmspro/img/1db53a9d958d514a7a8dfa60359c955b.pdf).
- 石川 智也, タイの個人情報保護法制と実務対応, 個人情報保護・データ保護規制ニューズレター, 2019. 11. 29., [https://www.jurists.co.jp/sites/default/files/newsletter\\_pdf/ja/newsletter\\_191129\\_data\\_protection.pdf](https://www.jurists.co.jp/sites/default/files/newsletter_pdf/ja/newsletter_191129_data_protection.pdf).